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이지훈 전화 02-3399-43866 / 팩스 02-3399-4801	보도자료 2020. 5. 21.(목)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목	성매매업자와 유착의혹 경찰관 비리 수사결과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●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형사부(부장검사 한태화)는 풍속 담당 경찰관이 관할구역 내 성매매업자와 유착하여 단속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하여 **담당 경찰관(A)과 성매매업자(B)를 구속 기소하였음**

1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A(46세, 경위)
 - '19. 2. ~ 6. B의 성매매 알선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아니하고, '19. 7. ~ '20. 2. B에게 단속정보 누설[**직무유기, 공무원비밀누설**]
 - '19. 2. ~ '20. 2. B의 성매매 알선을 입건하지 아니하고, 성매매 단속정보를 누설하는 등 비호하고,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인에게 공여하게 함[**부정처사후수뢰,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**

운영에관한법률위반

- B(39세, 성매매업소 운영)
 - '15. 2 ~ '20. 2.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9억원 상당 매출[**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(성매매알선등)**]
 - '19. 4. ~ 5. A의 지인에게 유흥주점 종업원들 상대 불법 대부업 투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등 제공[**제3자뇌물교부, 뇌물공여**]

2 수사경과

- '20. 2. 19. 고발인, 대검찰청에 고발 및 언론제보
- '20. 2. 24. 대검찰청에서 고발장 이첩받아 수사 착수
- '20. 2. ~ 5. A, B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, 계좌추적, 성매매업소 종업원 등 참고인 조사 등
- '20. 5. 4. 뇌물공여, 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인지 후 A, B 각 구속
- '20. 5. 20. B에 대한 범죄수익 추정보전
- '20. 5. 21. A, B 구속 기소 및 단속팀원 경찰공무원 등 3명 불구속 기소

3 참고사항

-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에 대하여도 A와 공모하여 직무유기 및 공무원비밀누설한 혐의 인정되어 입건 및 불구속 기소함
- B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추정보전하여 범죄수익을 박탈